■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정보 ([ ]공개 [0]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5412225	접수일 2014. 03. 14.

청구 내용	경상남도 스쿨미투(교내성폭력) 처리 현황 관련
공개 내용	**1. 개요** 1) 학교명: 비공개 2) 미투 발생 시기: 2018.3.~ 2018.12. 3)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10여명(전수조사 결과 남녀차별, 외모비하 등 포함 30여명) 4)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직위해제 조치 후 현재 일부 복귀 5) 학교별 피해학생 수: 불특정 다수 6) 피해 사례: 남녀차별/외모비하/성희롱적 발언/성추행 **2. 처리 및 경과** 1) 교육청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2)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당시 분리조치, 사안처리 후 일부 복귀 3)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보고서(원본): 비공개 4)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가. 교육청 징계요구: 징계요구 및 경찰수사 의뢰 나. 처리 결과: 비공개 5) 2차 가해 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 실시 가 내용 (1) 학생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 (2) 학생-성인지력 제고 교육 (3) 교직원-(성)폭력 예방교육 6)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학교 관리자 및 관련자 사과 7)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가. 학교 비(성)폭력 선포식 나.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적 실시 다. 학생 성인지력 제고 교육 실시 라. 학생회를 통한 학생 애로점, 건의사항 학교에 전달 시스템 구축 마. 학교 건의함 설치로 신고 간소화 바. 홈페이지 학교장 건의란 구축 사. 학생들에게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시 즉시 지적하여 고쳐질 수 있도록 당부 등등 학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개 일시	결재완료일 이후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V]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V]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위 비공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비공개함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